

다함께돌봄센터(진부점) 위탁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56
----------	----

제안연월일 : 2022. 10.

제안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워킹맘들의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진부점 설치에 따라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의거 센터 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시설 현황

- 위탁시설 : 다함께돌봄센터(진부점) ※정원 : 30명
- 위치 : 진부면 운송길 13(연꽃어린이집 2층, 독립공간)
- 규모 : 638㎡(193평)
- 운영예산 : 115백만원
- 주요시설 : 놀이공간(활동실),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3. 위탁개요

- 위탁단체 : 비영리법인 「월정사」
- 위탁기간 : 2023. 01. 01. ~ 2027. 12. 31.(5년)
- 위탁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선정방법 : 지정위탁
 - 진부점 : 비영리법인 「월정사」 ⇨ 부지 및 건물 무상임대
- 수탁자 선정 심의 및 위탁계약 체결 : 2022. 12월
- 개소예정 : 2023. 1월

4.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진부점) 운영·관리
- 위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위탁대상 시설 및 물품(장비, 비품 등)의 재산관리 및 운영

5. 기대효과

- 초등 돌봄사업 분야에 많은 경험과 경력,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 긴급상황 발생 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6. 관련자료

- 관련법령 1부. 끝.

관계법령 발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2022년 다함께돌봄사업안내 32쪽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사용권을 가진 자를 포함)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가능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 동의 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 에 지원할 수 있다.